

삼성융합의과학원 규정

제 1 장 총 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기관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삼성융합의과학원(이하 “의과학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의과학원은 보건 과학 및 기술과 관련이 깊은 의학, 약학, 생물학 및 공학이 참여하는 다학제적 융합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의과학 발전 및 의료기술 개발을 이룩하여 우리나라 의료산업에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 의과학원은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안에 둔다.

제4조(본교 제반규정과의 관계) ①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의과학원의 교원인사(임용 등) 및 교육부문 학사운영(교육과정·학생지도 포함)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“대학”은 “의과학원”으로, “학과”는 “융합 의과학과, 의료기기산업학과, 디지털헬스학과,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”로, “대학운영위원회”는 “의과학원 운영위원회”로 각각 본다.

제5조(사업) 의과학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분자의학, 재생의학, 신경과학, 바이오시밀러, 바이오의료정보학, 분자영상학 및 바이오공학 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
2. 상기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
3.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 및 기술 교류
4. 산·학 공동연구 계획 수립 및 지원
5. 국내외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
6. 관련 분야의 연구 자료 수집 및 발전 계획 수립
7. 정기간행물 발간 및 연구결과물 출판
8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6조(기구) 의과학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의과학원장
2. 위원회
 - 가. 자문위원회
 - 나. 운영위원회
 - 다. 홍보출판위원회
3. 연구부
 - 가. 분자의학 연구부
 - 나. 신경과학 연구부
 - 다. 재생의학 연구부
 - 라. 바이오시밀러 연구부
 - 마. 바이오의료정보학 연구부
 - 사. 분자영상학 연구부

- 아. 바이오공학 연구부
 - 4. 일반대학원(융합의과학과, 의료기기산업학과, 디지털헬스학과,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)
 - 5. 행정실
 - 6. 부설 연구기관
- 가. 의료인공지능연구소

제7조(의과학원장) ① 의과학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국내·외 저명한 학자 가운데에서 의무부총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③ 원장은 의과학원을 대표하며,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.
④ 의과학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과학원 부원장(이하 “부원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부원장의 임용절차·임기 등은 원장의 임용절차·임기 등을 준용한다.
⑤ 부원장은 대학원 융합의과학과장을 겸한다.
⑥ 원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, 그 직무대행은 부원장이 한다.

제 3 장 자문위원회

제8조(구성) ① 의과학원의 정책개발 및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② 자문위원회는 원장과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원장은 위원장이 된다.
③ 부원장, 삼성의료원 기획조정처장, 의과대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국내·외 저명 학·연·산 전문가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기능)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의과학원의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의과학원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의과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0조(회의)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4 장 운영위원회

제11조(구성) ① 의과학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원장과 소속 교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③ 위원은 의과학원 소속 교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의과학원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의과학원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3.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
- 4.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
- 5.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6. 의과학원 교수 임용, 교수 평가기준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7.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
8. 예·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
9. 산하 부서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10. 기기의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
11.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3조(회의)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.
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5 장 출판·홍보위원회

제14조(구성) ① 의과학원 간행물의 기획 및 출판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·홍보위원회를 둔다.
② 출판·홍보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출판·홍보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 한다.
③ 위원은 학내·외의 전문연구자 가운데에서 출판·홍보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④ 출판·홍보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5조(회의) 출판·홍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6 장 교원·연구원

제16조(의과학원 전임교원) ① 의과학원에는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의과학원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.
② 의과학원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제17조(겸직교수) ① 의과학원에는 겸직교수를 둘 수 있다.

- ② 겸직교수란 겸직으로 발령된 본교 전임교원으로 정의한다.
- ③ 의과학원 겸직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제18조(비전임교원) ① 의과학원에는 전임교원 외에 석좌교수, 특임교수, 연구교수, 명예교수, 대우전임교수, 초빙교원,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의과학원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제19조(연구원) ① 의과학원에는 상임 또는 초빙(객원) 연구원을 둘 수 있다.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상임연구원 :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.
 - 가. 수석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나. 책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다. 선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라. 연구원 : 석사학위이상 소지자
 2. 초빙(객원)연구원 :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.
 3. 연구원보 :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.
- ② 상임연구원은 원장이 추천하고 의무부총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그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를 원칙으로 한다.
- ③ 객원연구원은 원장이 위촉한다.

- ④ 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연구원보를 둘 수 있다.
- ⑤ 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의과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.
- ⑦ 의과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원 및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 7 장 교육과정

제20조(교육과정) 의과학원은 일반대학원(융합의과학과, 의료기기산업학과, 디지털헬스학과,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) 교육과정을 담당한다.

제21조(교육과정의 운영) ①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원장이 융합의과학과 학과장과 겸한다.

- 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22조(학사관리위원회) ① 일반대학원(융합의과학과, 의료기기산업학과, 디지털헬스학과,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)의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.

- ② 학사관리위원회 기능은 의과학원의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.

- ③ 학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(대학원)에 따른다.

제 8 장 행 정 실

제23조(행정실) ① 의과학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.

- ②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.

1. 의과학원의 일반 행정
2. 의과학원의 연구 행정
3. 대학원(융합의과학과, 의료기기산업학과, 디지털헬스학과,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) 교육업무
4. 의과학원의 교내·외 홍보업무
5. 의과학원의 간행물 발간, 연구결과물 출판 및 홈페이지 관리
6.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

제24조(행정직원) ① 행정실에는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두며, 본교 직원 가운데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행정직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의과학원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9 장 재 정

제25조(재정) ① 의과학원의 재정은 교비, 외부기관의 연구비,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- ② 의과학원은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26조(회계연도) 의과학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10 장 사업보고 및 감사

제27조(사업계획) 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8조(사업실적)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,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9조(감사) 의과학원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11 장 보 칙

제30조(세부사항) ①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성균관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하되 의과학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② 원장의 장기 부재에 따른 행정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부원장이 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.

제 2 편 연 구 기 관

제 1 장 의료인공지능연구소

제 1 절 총 칙

제31조(명칭 및 소재)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부설 의료인공지능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하며, 삼성융합의과학원 산하에 둔다.

제32조(목적) 연구소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, 이를 진료 현장에 적용하며 이를 사업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3조(사업) 연구소는 제3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인공지능 기술 연구
2. 인공지능의 의료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연구
3. 진단, 예후 예측, 신약, 치료법 등 의료 전반에 걸친 의료 인공지능 기술 연구
4. AI기반 진료지원시스템 개발
5. 국책 과제 수행
6. 산학 과제 수행
7. 기타 의료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사업

제 2 절 총 칙

제34조(기구)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.

1. 연구소장
2. 운영위원회
3. 기술평가위원회

제35조(연구소장) ① 연구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가운데서 삼성융합의과학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절 연구원

제36조(연구원)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원(員)을 둘 수 있다.

1. 연구위원 :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.
 2. 상임연구원 :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.
 - 가. 수석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나. 책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다. 선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감사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라. 연구원 : 석사학위이상 소지자
 2. 객원연구원 :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.
 3. 연구원보 :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.
- ②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.
- ③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
- ⑤ 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(위촉)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리서치펠로우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4 절 운영위원회

제37조(설치 및 구성) ① 연구소는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.
- ③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
-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38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
5. 연구소의 국제교류 및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
6. 연구소 산하 연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
7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39조(회의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운영위원의 회의 출석이 어려울 경우 그 의결권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 5 절 산학연협의회

제40조(설치 및 구성) 연구소가 생성한 연구결과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학연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- ① 산학연협의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소장이 맡는다.

- ②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, 연구소 운영위원이 겸할 수 있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1조(회의) ① 산학연협의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협의회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산학연협의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6 절 재 정

제42조(재정)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,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②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,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기금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.
③ 연구소의 현금 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.

제43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7 절 사업보고 및 감사

제44조(사업계획 및 보고)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,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5조(감사) 연구소는 그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8 절 해 산

제46조(해산) 연구소의 해산은 본교 「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」 제5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.

제 9 절 보 칙

제47조(세부사항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